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신단체취급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주계약에 준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주계약의 보험료에 (1-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신단체취급 보험료로 하며, 이 때 할인율은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한 할인율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종업원 복리후생의 일부로서 연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급여이체 등의 방법으로 일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관리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는 단체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단체와 회사의 협약에 따라 단체의 소속원 또는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자동이체납입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일괄 납입한 것으로 본다.

나. 대표자는 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시 피보험자의 탈퇴 또는 추가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4. 적용대상

개인보험 계약

15. 대상단체, 피보험단체, 신단체취급 보험료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가. 대상단체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 (1) 제1종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제2종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회원단체 : 제1종단체 및 제2종단체를 제외하고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고 그 회원명부에 등재 또는 서면에 의한 가입 의사 표시에 의해 구성된 단체(동호회, 동문회, 카드사 회원, 온라인 사업체 회원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만,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다수구매자집단 : 상품판매자가 자신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집단으로 500인 이상.

나. 피보험단체

- (1) ‘가’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다만,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

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 ② ‘가. 대상단체’의 ‘(2)’ 및 ‘(3)’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신단체취급 보험료 적용

- (1) ‘가’의 단체는 신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단체 및 제2종단체를 제외한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2)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 (1) ‘가’ 및 ‘나’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전달할 수 있다.
- (2) ‘(1)’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2)’를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단체의 대표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다.

17. 개별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이 특약은 소멸되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 납입 중인 때에는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 부분까지도 납입하여야 한다.

18. 기타

가. 단체협약 신청서의 서식은 별첨 서식으로 한다.

나.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한다.

